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43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 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시 필요한 절차와 대부료율을 명시하고, 공유재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함

## 2. 주요 내용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의2).
- 나.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 일부를 공유재산의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안 제6조제2항제3호).
-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규정함(안 제30조제3항제10호).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1052jjh@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을 축조하고자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지원청 및 제1관서 : 교육감
2. 제2관서 : 교육장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관련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7조 제7항의 기준가격 2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용도변경·용도폐지·처분

제30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4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을 축조하고자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교육지원청 및 제1관서 : 교육감                  2. 제2관서 : 교육장</p> <p>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관련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 회의 동의를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p> <p>② (생략)</p> <p>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영 -----                  -----                  -----                  -----</p>

<p>2. (생략)</p> <p>3. 영 제7조 제1항 제1호의 예정 가격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 및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 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 다) 또는 대장가격 5천만원 이 하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 처분</p> <p>4. ~ 5. (생략)</p> <p>제30조(대부료율) ① ~ ② (생략)</p> <p>③ (생략)</p> <p>1. ~ 9. (생략)</p> <p>&lt;신설&gt;</p>	<p>2. (현행과 같음)</p> <p>3. 영 제7조 제7항의 기준가격 2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용도변경· 용도폐지·처분</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30조(대부료율)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 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 용하는 경우</p>
---	---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times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div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  
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  
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라. 그 밖의 비영리법인
  22. 제21호에 따른 도서·벽지 외의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  
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  
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0.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2.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3.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한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지 곤란한 경우
-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풍력
- 다. 수력
- 라. 해양에너지
- 마. 지열에너지
-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

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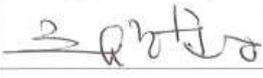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단

연번	의원명	서명	비고
1	구미경		
2	김익		
3	최공순		
4	박재민		
5	박병환		
6	김동섭		
7			
8			
9			
10			
11			
12			
13			
14			
15			